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39

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: 김철민 • 권인숙 • 김영배

박찬대 • 서동용 • 신동근

양정숙 • 이규민 • 이해식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·증축 및 개수·보수,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,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.

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 정임.

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 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 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 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.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,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해당"을 "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"으로 한다.

-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3제2항 중 "7명"을 "15명"으로, "구성하되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"를 "구성하며,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

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직원 또는 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적립금) ① ~ ⑤ (생	제32조의2(적립금) ① ~ ⑤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
	교육기관을 설치・경영하는 학
	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
	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
	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
	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
	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
	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
	점검을 하여야 한다.
<u>⑥</u> 교육부장관은 <u>해당</u> 대학교	<u>⑧</u> <u>제7항에 따른</u>
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	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
•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	
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	
립 여부, 적립 규모, 적립 기간	
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	
할 수 있다.	
<u>⑦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치 등) ① (생 략)

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

 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

 으로 구성하되, 회계 또는 재무

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

 포함되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-15명-----

----구성하며,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생 략)